

의안번호	2216078
의 퇴 인	최형두의원
회 답 일	2026. 3. 23.
추 계 번 호	26B0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u><삭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u>	재량규정
2	안 제70조(벌칙)	<u><삭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함.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함(제4항)</u>	의무규정
3	안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항) <u><삭제>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0조(벌칙)	
3	안 제76조(과태료)	

2. 상세 사유

- 2026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7. 7. 시행)¹⁾은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44조의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해당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
 - (제44조의14, 제76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여금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7. 7. 시행)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규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익에 대한 몰수 규정’,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²⁾, 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및 개정안의 내용 비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개정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 대한 과징금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 해당 규정 삭제

2) 또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7. 7. 시행)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유통금지, 신고·조치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 삭제, 분쟁조정부 규모 축소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개정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금품·이익 몰수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익 몰수	- ※ 해당 규정 삭제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해당 규정 삭제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 7. 7. 시행)은 아직 시행 전이며, 재정수입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개정안은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 삭제(제44조의17³⁾ 삭제), 분쟁조정부 규모 축소(안 제44조의18⁴⁾) 등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명성센터 설립 비용 및 인건비(투명성센터 및 분쟁조정부) 등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는 재정지출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⁵⁾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4) 안 제44조의18(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